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국가 부담 등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79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제221727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국가 부담(안 제29조의3)	3
나.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 신설 (안 제38조의8 신설)	11

I.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제221727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6.

다. 회 부 일 : 2026. 3.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

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3 및 제38조의8 신설).

3. 검토의견

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국가 부담(안 제29조의 3)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부담)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 비용(이하 “유지보수비”라고 한다)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에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산업단지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을 포함시키고 있고²⁾, 같은 법 시행령은 입주기업체 등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을 ‘산업단지의 관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³⁾,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관리체계에 기반하되, 해당 기반시설에 관하여 개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예컨대 「도로법」은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유지보수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⁴⁾.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② 법 제2조제1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용수공급시설·정보통신시설·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4)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

이처럼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산업단지 기반시설⁵⁾의 경우 유지보수비가 재정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 기반시설이 적기에 정비되지 못하여 노후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⁶⁾,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

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5) 예컨대 지방도·시도·군도·구도는 「도로법」, 공공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가 되며, 공동구도 관련 지침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자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상수도 등 일부 시설은 개별 시설의 법적 성격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

설의 유지보수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⁷⁾.

이에 개정안은 안전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⁸⁾의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권자인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와 달리 국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⁹⁾)가 관리권자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유지보수비 지원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가 없음.

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8.6%에 그치고 있음(2025년 기준). 이는 2016년 52.5% 수준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¹⁰⁾, 이는 국가가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는 체계로 이해됨.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현행보다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¹¹⁾이 제출되어, 당시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가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기반시설(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이나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할 것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시설일 것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2012. 9. 21)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¹²⁾의 반대의견¹³⁾ 등을 반영하여 국비 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과 수정(2015.12. 8)된 바 있음.

【 현행법 제29조의3 개정연혁 】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안 (2012. 9. 21.)	법사위 수정안(현행과 동일) (2015. 12. 8.)	개정안
제29조의2(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부담)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 이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안 제1900210호, 주승용의원안 제1900382호, 이재영의원안 제1900691호, 전해철의원안 제1900697호)가 각각 발의되었음.

12) 現 기획예산처

13)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부 재정지원 원칙과의 불일치 및 유사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였음.

둘째,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량이 인정되었던 국가의 유지보수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바,

유사 입법례를¹⁴⁾ 참고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재량으로 규정하고, 지원의 한도액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¹⁵⁾이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인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권향엽의원안, 의안번호 제2204552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u>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u>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 ----- ----- <u>예산의</u> ----- ----- ----- <u>전부 또는 일부를</u> -----.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소유·관리 주체는 개별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기반시설은 소유권자가 관리한다는 재정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예산에서 국가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를 부담할 경우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감소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 신설(안 제38조의8)

현행	개정안
<신설>	제38조의8(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국가산업단지와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차입금 7. 해당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

현행	개정안
	<u>금 및 그 밖의 수익금</u> 8.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u>재원</u> ③ <u>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u>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u> 2. <u>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u> 3. <u>기반시설 개량 비용</u> 4. <u>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u>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와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가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8).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¹⁶⁾.

16)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

따라서 개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둘 경우 특별회계의 정책 목적과 세입 구조 등을 보다 명확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 제39조의19¹⁷⁾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는데¹⁸⁾, 개정안의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는 해당 규정

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차입금
6.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채투자를 위한 환수금
7. 해당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단지재생사업을 제39조의6제3호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성군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

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신설될 경우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¹⁹⁾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안 제29조의3이 신설되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될 경우,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귀속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38조의8),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²⁰⁾, 재건축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담금의 본래 목적과의 관련성이 약한 측면이 있어 세입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¹⁾.

또한,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주택도시기금 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 기금·특별회계의 재원 등으로 개별법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는바²²⁾,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재건축이익환수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²³⁾.

2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강래의원 대표발의, 제174197호) 제안이유

21) 헌법재판소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상 정당화 요건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그 부과를 통해 추구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 만한 집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임 [전원재판부 2007헌마860, 2008. 11. 27]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제3조에 따라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에 100분의 30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0이 각각 귀속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 한다)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재정비촉진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도시재생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실제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제3호는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규정²⁴⁾하고 있음에도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법령 간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²⁵⁾, 이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²⁶⁾.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될²⁷⁾ 예정인바, 특별회계 설치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 한편,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도 세입으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건축이익환수법」 제4조에 명시되어있지 않은바,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85호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안, 제2101814호) 검토보고서

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7. 1.]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현행법상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와 목적·세입·세출이 구조가 유사²⁸⁾하여 별도의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9

28) 두 특별회계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회계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장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반면, 개정안의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는 모든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음. 아울러 세입의 경우에도 개정안은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서의 세입 항목에 더하여 국가의 보조금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